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6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위성곤 · 오세희 · 임호선
서미화 · 김기표 · 허영
박희승 · 양문석 · 추미애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탈착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나,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인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개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요건 준수, 불법개조 금지 등의 규제를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

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중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자전거는 구조와”를 “자전거는 크기, 구조, 장치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4조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전기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전기자전거</u> 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의2(<u>자전거</u> 의 안전요건 등) ① <u>자전거</u> 는 크기, 구조, 장치와----- ----- -----.
② 누구든지 <u>전기자전거</u> 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자전거</u> ----- ----- -----.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u>자전거</u> ----- ----- -----.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u>전기자전거</u> 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 ----- <u>자전거</u> ----- ----- <u>자전거</u> ----- ----- -----.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전기자전거</u> 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u>전기자전거</u> 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	제25조(과태료) ① ----- ----- <u>자전거</u> ----- ----- <u>자전거</u> ----- ----- -----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